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김환동위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및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닥물, 연막소독 등의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의 사전신고(안 제2조)

- 1)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중 소방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 2)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방법, 해당지역 또는 장소를 정함.
- 3)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안 제3조)

- 1)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외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스나 전기 용접·용단기의 관리기준을 정함.
- 3)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모닥불, 연막소독 등의 사전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제4조)

- 1) 불피움·연막소독의 사전신고 의무위반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함.
- 3)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경과

이 조례안은 2005년 5월 29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방법 및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2005년 10월 2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사전신고(안 제2조)

안 제2조는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신고 대상지역 및 장소와 신고 방법을 정하고 있음.

이는 신고지역 확대로 일부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은 있으나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기준 관련(안 제3조)

안 제3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4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참고자료1 소방차 오인출동 현황

(단위 : 회)

연도별	계	연 막 소 독	쓰레기 소 각	연기로	타 는 냄 새	방 화 기 도	경 보 오동작	기 타
2006	2,494	24	674	925	153	10	77	631
2007	2,269	21	701	816	135	8	64	524
2008	2,383	18	699	859	177	15	125	490

참고자료2 용어설명

□ 그라비아인쇄기

그라비아인쇄기는 판(板)에 인화성 잉크를 문혀 판면의 문자나 그림을 고속 운전으로 찍어 내는 인쇄방식으로 각종 인화성 용제의 사용과 다량의 분진이 발생 그리고 고속으로 운전되는 인쇄기계의 특성상 다른 인쇄방식보다 마찰 열이나 스파크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음.

□ 기모기(起毛機)

기모기는 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기계로 원료의 가공시 정전기 및 분진의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음.

질의자료

1. 2005년도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은 이유?
2. 그동안 오인출동이 많았을 텐데, 조례제정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어느정도 예상하는지?
3. 조례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